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05
------	------

2025. 3. 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3일, 문성호 의원(찬성자 26명)

나. 회부일자 : 2025년 2월 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3.4.)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문성호 의원)

### 1. 제안이유

- 비인기 종목의 발전 및 활성화와 효과적인 종목별 청소년 유망주 의진로 지원을 명시하며, 서울특별시 내 비인기 종목 전문체육 진흥과 발전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제안함

## 2. 주요내용

- 가. 비인기 스포츠 종목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
- 나. 비인기 스포츠 종목 청소년에 대한 훈련장 설치 및 운동 장비의 일부 지원
- 다.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 라.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경기 횟수 보장을 위한 지원
- 마.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 가. 제정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국민적 관심과 대외적 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는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활성화 및 비인기 스포츠 종목에서 훈련받고 있는 우수한 청소년 선수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음.

### 나. 비인기 스포츠 종목 현황

- 우리나라 스포츠는 최근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및 2024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등에 따라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국민적 관심은 일부 종목에 국한되거나 국제대회 당시 선수들의 활약에 따른 일시적 감동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임.
- 비인기 스포츠 종목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비인기 종목 관련 학술 연구 등에서는 ▶프로스포츠 유무, ▶동호회 활동의 활발 정도, ▶스

포츠 인프라 구축 등을 지표로 삼아 구분하고 있음.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인기 종목은 충족하는 다른 종목에 비해 기초 기반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으며, 비인기 종목을 지원하는 것은 단일 종목의 성장뿐만 아니라 전체 스포츠 생태계에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됨.

- 또한 스포츠의 종목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비인기 스포츠 종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진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다. 청소년 선수 현황

- 서울시에는 총 16,577명의 청소년 전문 선수(장애청소년 선수 143명 제외)가 등록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64개 종목(장애청소년 39개 종목 제외)에서 12세 이하 5,792명, 15세 이하 5,715명, 18세 이하 5,070명의 선수가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음.

#### <서울시 청소년 및 장애청소년 전문체육 선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12세 이하	15세 이하	18세 이하
청소년 선수	16,577	5,792	5,715	5,070
장애청소년 선수	143	14	41	88

- 현재 국가대표 이하 선수들의 경우 역피라미드형 선수양성(꿈나무-청소년-후보-국가대표) 구조<sup>1)</sup>로 인하여 선수 저변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고 전

1) 각 용어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선수”는 종목별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되어 당해연도 후보선수 육성 사업에 참가한 차기 국가대표 선수를 말한다.
2. “청소년선수”는 종목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되어 당해연도 청소년대표 육성 사업에 참가한 12세부터 18세 사이의 대표선수를 말한다.
3. “꿈나무선수”는 종목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되어 당해연도 꿈나무선수 육성 사업에 참가한 7세부터 14세 사이의 대표선

문스포츠 영역 또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이에 따라 스포츠 영재 발굴·육성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꿈나무-청소년-후보 등 단계별 지원 종목을 확대하여 전문선수 육성체계를 개편하고, 각 단계별 연계성을 강화하여 역피라미드 구조를 피라미드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 동 조례안 역시 청소년 단계에서 종목별로 두각을 보이는 선수를 지원하여 미래의 국가대표 등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음.

## 라. 조례안 검토

### (1) 제안의 배경

- 제정안은 대중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다른 종목에 비해 재정 및 전문인력 등이 열악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활성화 및 해당 종목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유망주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판단됨.

### (2) 조례제정의 필요성

- 정부에서 비인기 종목 활성화만을 위해 진행하는 별도의 세부 사업은 존재하지 않지만,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우수선수 양성지원 사업을 통하여 후보-청소년-꿈나무육성 단계로 우수선수 육성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초 종목이 육성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등을 통한 민간보조를 하고 있음.

- 서울시 역시 비인기 종목만을 지원하는 별도 세부 사업은 존재하지 않으나, 비인기 취약종목 및 민간기업 운영 기피 종목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는 2024년 10월 기준 23개 종목 25개팀 188명(지도자 33명, 선수 15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체육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양궁, 육상, 수영, 펜싱, 스키, 컬링 쇼트트랙 등 하계와 동계 종목을 아울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하계 국제 종합대회인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음.
-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례로 볼 때, 비인기 종목 및 선수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면 국제 주요 대회에서의 우수한 입상 성적을 거두는 등 서울 스포츠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경우 하계 및 동계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수상할 경우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얻기는 하지만,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비인기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동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아울러 종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종목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전문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인기 종목의 청소년

유망주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선수들의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뿐만 아니라, 서울 스포츠의 저변확대라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3) 주요 조문 검토

#### 가) 정의(안 제2조)

- 제정안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를 위해 비인기 스포츠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 종목을 정의하고 있으며,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제1항을 살펴보면, 육상·역도·핸드볼 등 하계 종목과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등 동계 종목들이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음.

#### <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 종목 >

구분	종목명
운동 종목	육상, 역도, 핸드볼, 럭비, 여자축구, 비치사커, 배드민턴, 테니스, 정구, 스쿼시, 탁구, 복싱, 유도, 레슬링, 체조, 사이클, 승마, 하키, 아이스하키, 사격, 펜싱, 양궁,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카바디, 소프트볼, 볼링, 세팍타크로, 스포츠클라이밍, 패러글라이딩, 롤러스포츠, 수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스위밍, 조정, 카누, 요트,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스노보드, 프리스타일스키, 노르딕복합, 바이애슬론,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컬링, 태권도, 카라테, 우슈, 주짓수, 킥복싱, 바둑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는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조항으로 이 조항의 신설 사유를 살펴보면, 비인기 체육 종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해당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할 경우 훈련비 등 경비로 소요된 금액을 세액으로 일부 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음.

- 따라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 특례 대상 종목을 동 조례안의 비인기 종목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비인기 종목 관련 타 법령<sup>2)</sup>에서는 장관이 인정하는 종목도 비인기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확인되므로,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비인기 종목을 발굴하는 등 서울시의 현실에 맞는 비인기 종목의 대상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나) 사업(안 제4조)

- 안 제4조는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인기 종목 청소년 유망주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관광체육국에서 ‘민간단체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성인 이외에 ‘햇돌햇돌 유아스포츠단 운영’ 등의 사업을 기진행한 바 있으므로 사업수행과 예산지원 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으로 비인기 스포츠 종목 청소년 유망주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명시하였는데, 장학금의 경우 학업이나 연구 성과가 뛰어난 사람에게 지급되는 돈이라는 의미가 있어 정규 학업과정 밖에 있는 청소년 유망주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소속에 상관없이 유망주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

---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4조(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종목을 말한다.

1. 육상
2. 수영
3. 체조
4. 빙상
5. 스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종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목

단됨.

< 안 제4조 수정의견 >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조(사업) ① 시장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 ----- -----.
1. 비인기 스포츠 종목 청소년 유망주에 대한 장학금 지원	1. ----- 훈 련비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 제정안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안 제5조의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위해 복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협의체 구성과 운영은 이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합해야 함.

동 개정안의 자문위원회는 안전 발생 시 구성하고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합치되기에 법제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정안의 위원회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안 제5조제1항제1호의 청소년 유망주 지원 선정에 대해서 위원회의 역할인 자문을 넘어 지원 대상을 정하는 심의·의결의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기에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스포츠는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해야 하며,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장애 학생 선수를 위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애 청소년 유망주 역시 육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자문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서울특별시체육회와 더불어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 수정의견 >**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 ----- ----- -----.
1. 비인기 스포츠 종목 청소년 유망주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1. ----- 추천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서울특별시체육회</u> 가 추천하는 사람	3. <u>서울특별시체육회</u> 및 <u>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u> -----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제정안은 시장이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교육청, 각급 학교,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청소년 선수의 경우 학교 운동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 외에도 선수 활동의 집중을 위하여 의무 교육과정 이후 학교 밖에서 선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협력체계 구성에 있어 회원종목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라) 소결

- 그동안 관심과 지원에서 소외된 비인기 스포츠 종목이 선수들의 노력만으로 종목의 명맥을 이어 나가고 있는 현실과 일부 대기업의 지원이 미담으로 소비되는 스포츠 현실을 개선하고자 비인기 스포츠 종목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을 부여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일부 인기 종목에만 치우쳐진 상황에서 동 제정안을 통해 종목간 고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종목의 근간이 될 청소년 유망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임.
- 다만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와 청소년 유망주 지원은 단기적 예산 투입만으로는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기에, 장기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현실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여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수립할 때만이 동 제정안의 제정 취지가 현실화될 것으로 판단됨.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요지 : 「없음」

#### VI.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사업 수혜 대상이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비인기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 위원회 운영에 있어 본연의 역할을 넘지 않도록 자문 사항에 있어 청소년 유망주에 대한 추천만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면서,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에 있어서 장애 청소년 유망주도 논의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나.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청소년 유망주 지원이 확대되기 위해 용어를 수정함(안 제4조 제1항제1호).
- 나. 위원회 자문 사항에 있어 자문 역할을 넘지 않도록 수정함(안 제5조제1항제1호).
- 다. 위원회 위원 추천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를 추가함(안 제5조제4항제3호).

VI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조례인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장학금”을 “훈련비”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지원”을 “추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체육회”를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사업) ① 시장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1. 비인기 스포츠 종목 청소년 유망주에 대한 <u>장학금</u> 지원</p> <p>2. ~ 5.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사업) ① ----- ----- -----.</p> <p>1. ----- -- <u>훈련비</u> ----</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비인기 스포츠 종목 청소년 유망주 <u>지원</u>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p> <p>2. ~ 4. (생략)</p> <p>②·③ (생략)</p> <p>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광체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2. (생략)</p> <p>3. <u>서울특별시체육회</u>가 추천하는 사람</p> <p>4.·5. (생략)</p> <p>⑤ ~ ⑦ (생략)</p>	<p>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 ----- ----- -----.</p> <p>1. ----- <u>추천</u> -----</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u>-----</p> <p>4.·5. (현행과 같음)</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인기 스포츠 종목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서울특별시 전문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인기 스포츠 종목”이란 사회적 관심도 및 인지도가 낮은 스포츠 종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종목을 말한다.
2. “청소년 유망주”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관내 학교장의 추천이 있거나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이 주최한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사업) ① 시장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비인기 스포츠 종목 청소년 유망주에 대한 훈련비 지원
2. 비인기 스포츠 종목 청소년 유망주에 대한 훈련시설·장비 지원
3. 비인기 스포츠 종목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4. 비인기 스포츠 종목 대회 및 행사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비인기 스포츠 종목 청소년 유망주 추천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장으로서 하고, 부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체육 담당 부서 공무원
3.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추천하는 사람
4. 체육 분야 교수 및 전문가
5. 그 밖에 체육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교육청, 각급 학교,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